

튀니지 (Tunis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, 자영자	근로자, 자영자	-
보험료율	12.5%(노4.74/사7.76)	12.5%(노4.74/사7.76)	-
노령연금 지급 요건	가입기간 120개월, 60세	가입기간 120개월, 60세	-
노령연금 지급률(20년 기준)	60%	60%	-
일시금	가입자의 총 납부보험료	가입자의 총 납부보험료	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60년(비농업 근로자, 1974년도 시행), 1995년(자영자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민간부문 근로자 및 자영자
- 임의적용 : 해외 현지 국가나 상호협정을 통해 가입되지 않은 해외 고용 튀니지 국민
- 특별제도 : 공무원, 국회의원, 군인, 농업근로자, 농부, 가사근로자, 예술가, 특정 범주의 어부 및 저소득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분기별 소득총액의 4.74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·상한 소득 기준 없음
 -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
 - 사망급여 및 사망일시금은 질병 및 출산급여 재원으로 지급
- 자영자 : 분기별 소득총액의 7%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·상한 소득 기준 없음
 -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
 - 사망급여 및 사망일시금은 질병 및 출산급여 재원으로 지급
- 사용자 : 분기별 임금 총액의 7.76%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·상한 소득 기준 없음
 -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
 - 사망급여 및 사망일시금은 질병 및 출산급여 재원으로 지급
- 정부 : 없음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- 보험료 납부기간 120개월 이상, 60세
 - 힘든 일로 인한 조로(早老), 6개월 이상 비자발적인 실업 또는 3자녀 이상의 어머니의 경우,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, 50세
 - 자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40분기 이상, 65세
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부분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60개월~119개월, 60세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360개월 이상, 55세 ; 자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40분기 이상, 60세
- 장애연금
- 소득능력 66.7% 이상 영구 상실 판정, 보험료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, 정상 퇴직연령 미만 ; 비산재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없음
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의료위원회는 가입자가 5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장애정도를 심사함
 - 상시간호보조금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
 - 장애연금은 정상 퇴직연령 도달 시 중지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유족연금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이었거나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60개월(자영자의 경우 120개월) 이상인 경우 ; 사망자가 퇴직연령 미만이고 비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없음
 - 수급 가능 유족
 - 배우자
 - 16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는 21세,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은 25세, 장애아 또는

소득이 없는 미혼인 딸은 나이제한 없음)

- 55세 전 재혼 시 배우자연금은 정지됨
- 사망급여
 - 사망 전 최종 2분기 중 50일 이상 고용기간이 있거나 최종 4분기 중 80일 이상 고용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
 - 사망의 원인이 사고인 경우 고용기간 요건 없음
 - 자영자의 경우 사망 전 최종 4분기 중 2분기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
 - 피부양자녀보조금 : 각 피부양 자녀에 대해 지급
- 사망보조금
 - 배우자나 피부양 자녀의 사망 시 가입자에게 지급
 - 가입자는 대상자 사망 전 최종 2분기 중 50일 이상 고용기간이 있거나 최종 4분기 중 80일 이상 고용기간이 있어야 함
 - 자영자의 경우 대상자 사망 전 최종 4분기 중 2분기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□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- 퇴직 전 120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40%(자영자의 경우 30%)에 120개월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매 3개월 당 월 평균소득의 0.5%씩 추가한 금액
 - 월 최저연금액 :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월 최저임금의 66.7%
 - 월 최대연금액 : 퇴직 전 120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80%로,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월 최저임금의 6배까지
 -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월 최저임금 : 378.56 dinars(2018년5월)
 - 부분연금 : 완전연금에 필요한 분기 요건보다 부족한 매 납부 분기마다 비율 감액
 - 월 최저부분연금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50%
 - 조기연금 : 60세(자영자의 경우 65세) 전, 연금이 청구된 매분기 당 0.5%씩 감액
 - 급여 조정 : 법정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
- 노령청산금
 - 가입자의 총 납부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

□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장애발생 전 120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0%에 180개월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매 3개월 당 월 평균소득의 0.5%씩 추가한 금액
 - 자영자의 경우, 장애발생 전 60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30%에 60개월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매 3개월 당 월 평균소득의 0.5%씩 추가한 금액

- 월 최저연금액 :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월 최저임금의 66.7%
- 월 최대연금액 :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80%로,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월 최저 임금의 6배까지
-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월 최저임금 : 378.56 dinars(2018년5월)
- 상시간호보조금 : 장애연금의 20%
- 급여 조정 : 법정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

□ 유족급여

○ 유족연금

- 유족배우자 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75%를 피부양 자녀가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
 - 피부양 자녀가 1명인 경우 70%, 2명 이상인 경우 50% 지급
- 고아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30%를 수급 자격이 있는 고아 1명에게 지급
 - 2명 이상인 경우 50%를 균분 지급
 - 완전고아인 경우, 3명까지는 각각 30% 지급
 - 완전고아가 4명 이상인 경우,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균분 지급
- 유족연금 총액 상한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100%임
- 급여 조정 : 법정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

○ 사망급여

- 사망 전 3년간 또는 최종 5년간의 사망자 월 평균소득(둘 중 높은 금액)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험료 납부기간 1년 당 평균소득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 18개월)을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 - 사망급여는 사망자가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는 감액
(70세 이전 사망 50%, 70~74세 사망 시 40%, 75~79세 사망 시 30%, 80~84세 사망 시 20%, 85세 이상인 경우 10%로 감액)
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평균소득 상한액은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월 최저임금의 6배
-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월 최저임금 : 378.56 dinars(2018년5월)
- 최저 사망급여는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연 최저임금
- 주당 48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연 최저임금은 4,542.72 dinars
- 피부양자녀보조금 : 각 피부양 자녀 당 사망보조금의 10%를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사망수당

- 피부양 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 시 일일 질병급여 10~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일일 질병급여는 가입자 일 평균소득의 66.7%로, 법정 일 최저임금의 2배까지

- 급여 산정을 위한 일 평균임금은 지난 4분기 중 가장 높았던 1분기의 소득을 90으로 나누어서 산출
- 법정 일 최저임금은 14.56 dinars

7 관리운영기관

- 사회부(Ministry of Social Affairs)
 - 전반적 감독
 - <http://www.social.tn>
-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보험료 징수 및 지사를 통하여 제도 운영
 - <http://www.cnss.tn>

<2019년 ISSA 자료>